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30100179		
최초 등록일	2013.03.06	최종 등록일	2025.06.19

#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 정보공개서

[(주)튼튼영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튼튼영어

대표번호	1577-0589	팩스번호	02-560-0517
가맹사업운영부서	베이비리그사업본부	가맹부서전화번호	1577-058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4, 7층(도곡동)		
www.ebabyleague.com		info@ebabyleague.com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내·외국기업여부
4. 인수·합병여부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의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7.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8. 가맹본부의 임직원수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경영사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시작일
2. 튼튼영어 베이비리그의 연혁
3. 가맹사업의 업종
4. 3개 사업연도 말 튼튼영어 베이비리그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3개 사업연도 말 튼튼영어 베이비리그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10. 광고·판촉지출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선고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중의 부담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4. 영업지역
5.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 및 겸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분담기준
10.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개점절차
2. 분쟁해결절차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역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사항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튼튼영어의 “튼튼영어 베이비리그”)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계약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 1. 당사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2020년 04월 01일	사업자등록일	2020년 04월 01일
법인등록번호	110111-7444469	사업자등록번호	241-88-01632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튼튼영어	(주)튼튼영어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외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4, 7층(도곡동)
특수관계인 (임원)	조덕현(대표이사) 박홍균(사내이사) 박철균(사내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조덕현	1577-0589
구분	명칭(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소
특수관계인 (분할전 회사)	(유)유니박스	(유)유니박스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외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4(도곡동)
			대표자	대표번호
			박철균	1577-058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0111-1110082			120-81-51404	

☞가맹사업법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 3. 내·외국기업여부


당사는 내국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4. 인수·합병여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없습니다.

###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명	상호	서비스표 관련정보	BI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등록번호 4102301150000(제 41 류)	

브랜드명	이미지(BI)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는 2020년 사업 전개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1,385,077	13,082,893	8,302,184	15,982,867	-343,344	-905,533
2023년	19,372,327	12,830,652	6,541,674	13,891,872	-1,485,911	-1,707,026
2024년	16,470,668	13,545,982	2,924,686	11,830,864	-3,044,171	-3,368,425

나.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덕현	2022.11~현재	(주)튼튼영어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2.11~현재	(주)라트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2.11~현재	(주)미세기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박홍균	2020.04~2022.11	(주)튼튼영어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2.11~현재	(주)튼튼영어 사내이사	경영지원
		2020.04~2022.11	(주)미세기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2.11~현재	(주)미세기 사내이사	경영지원
		2020.04~2022.11	(주)라트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2.11~현재	(주)라트 사내이사	경영지원
		박철균	2011.02~현재	(주)라트 사내이사
	2017.04~현재		(유)유니박스(분할전)	회사업무 총괄
	2020.04~현재		(주)튼튼영어 사내이사	경영지원
	2017.04~현재		(주)미세기 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0.06~현재		(유)유니박스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	70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튠튼영어	튠튼영어베이비리그 (20130100179)	2020년~현재	교구재가맹사업
		튠튼영어마스터클럽 (20100100281)	2020년~현재	학원가맹사업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귀하가 당사의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 이미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서비스 표		2020-12-28	4016761840000	(주)튠튼 영어	2030-12-28	
		2020-12-28	4016761850000		2030-12-28	
		2020-12-28	4016761860000		2030-12-28	
		2020-12-28	4016761870000		2030-12-28	
		2012-03-26	4009121170000		2032-03-26	
		2012-03-26	4009121180000		2032-03-26	
		2012-03-26	4009121190000		2032-03-26	
		2012-03-26	4009121200000		2032-03-26	
		2003.03.13	4500071310000			2033.03.13
		2012.04.12	4102301150000			2032.04.12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당사의 가맹사업현황

###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3년 4월 29일입니다.  
 \*당사의 직영점 시작일은 2012년 12월 24일입니다.

### 2.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의 연혁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튠튼영어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오인숙	2013.04~2013.07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4-1
(주)튠튼영어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오인숙	2013.07~2017.0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4(도곡동)
(유)유니박스 (분할전 회사)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박철균	2017.04~2020.0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4(도곡동)
(주)튠튼영어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박홍균	2020.04~202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4, 7층(도곡동)
(주)튠튼영어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조덕현	2022.11~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4, 7층(도곡동)

### 3.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의 업종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교육(외국어)	베이비리그 외 영유아 영어 교육 프로그램

### 4. 3개 사업연도 말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의 전국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81	79	2	76	74	2	67	65	2
서울	16	15	1	15	14	1	12	11	1
부산	5	5	-	5	5	-	3	3	-
대구	5	5	-	5	5	-	5	5	-

인천	5	5	-	5	5	-	5	5	-
광주	2	2	-	2	2	-	2	2	-
대전	2	2	-	2	2	-	2	2	-
울산	4	4	-	4	4	-	4	4	-
세종	1	1	-	1	1	-	1	1	-
경기	20	19	1	20	19	1	16	15	1
강원	2	2	-	2	2	-	2	2	-
충북	1	1	-	-	-	-	-	-	-
충남	3	3	-	3	3	-	3	3	-
전북	2	2	-	2	2	-	2	2	-
전남	2	2	-	1	1	-	1	1	-
경북	4	4	-	3	3	-	3	3	-
경남	6	6	-	5	5	-	5	5	-
제주	1	1	-	1	1	-	1	1	-

###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년	81	-	-	2	2	79
2023 년	79	1	-	6	2	74
2024 년	74	-	-	9	4	65

###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상호/이름	영업표지	업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및직영점수		
				2023.12.31	2023.12.31	2024.12.31
(주)튠튼영어	튠튼영어 마스터클럽	학원가맹사업	20100100281	301/-	301/-	268/-
(주)튠튼영어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교구재가맹사업	20130100179	74/2	74/2	65/2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평균 매출액						비고
		매출액	면적 3.3 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 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 m <sup>2</sup> 당	
전체	65	81,019	2,407	408,672	32,516	436	14	65곳 산정
서울	11	126,519	4,129	282,715	32,516	54,078	1,352	11곳 산정
부산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5	71,421	2,175	136,452	2,886	29,071	969	5곳 산정
인천	5	72,374	2,071	111,727	3,886	36,280	1,209	5곳 산정
광주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15	82,065	1,958	178,654	4,826	12,435	413	15곳 산정
강원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5	90,140	3,310	127,755	5,628	32,945	1,098	5곳 산정
제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자체프로그램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3 항 ·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튼튼영어베이비리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튼튼영어베이비리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65	3,11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지출내역**

정보공개일 바로 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	
판촉비	-	연중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담당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미래채널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02-2151-3996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	조치일자	조치내용
(주)튼튼영어	의결 제 2022-210 호 (2021 서경 0821)	가맹사업법	광고나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 통보방법 미준수 (제 13 조의 5 제 2 항)	2022.08.10.	시정명령
(주)튼튼영어	시권 제 2022-005 호 (2022 약관 1583)	약관규제법	가맹금 반환 예외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제 9 조제 5 호, 제 14 조제 1 호)	2022.09.06	시정권고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 최초 가맹금

귀하(신규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가맹비의10%) 2.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90%)	22,000,000 (인구 10만명 당 5,500,000, 최대 가맹비 55,000,000)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됨
교육비	개점 전 서비스 교육	3,300,000	교육실시 이후 소멸 오픈 6개월 이후 자동 소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됨

\*귀하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으나 가맹사업보증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보증한도(단위:원)	보증보험료
가맹사업 보증보험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품매입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30,000,000	한도 금액의 연 3% 이내 보험료 납부 *서울보증보험 (가입 후 본사에 원본제출)

다. 예치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양수인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 계	25,300,000~58,300,000	3,300,000
가맹비	22,000,000~55,000,000	-
교육비	3,300,000	3,300,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99m<sup>2</sup> 기준/VAT 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금액	3.3 ㎡당		
간판	자체조달	2,200,000	-	가맹 계약 시 개별 계약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책상 및 의자		1,100,000	-		
실내인테리어	디자인앤 그룹	49,500,000	1,650,000		
디자인 기획관리비	스페이스 디앤에이	2,200,000	-		
컴퓨터	자체조달	1,100,000 (1대)	-		
전화		550,000	-		
냉/난방공사		2,750,000	-		
초도 교구재	가맹 본부	5,500,000	-		
<b>합계</b>		<b>64,900,000</b>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3.3 ㎡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실제 크기에 따라 정률로 금액이 가감되지는 않습니다.
- ③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⑤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가맹점 건물에 따른 철거, 전기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내역	지급시기
예치가맹금	가맹비, 교육비	계약체결 시
초도교구재 등	교구재 등	협의 후 주문

\*금전지급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점희망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가맹점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사.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세 이상일 것
큐레이터, 크리에이터	특별한 기준 없음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만 18세 이상일 것

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구재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당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당사 협력업체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시공, 구입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 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개설 이후 교육비	큐레이터, 크리에이터 교육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청구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정기교육	가맹본부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관측분담비	공동관측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측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시행되는 공동광고	가맹본부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점포 환경 개선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권유 또는 개별 계약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VII-1 참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 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지연 이자	금전 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	가맹 본부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4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산정한 차액가맹금에는 인건비, 물류비용, 저작권료, 창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의 마진은 차액가맹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명의인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여 귀하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자체 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원자재, 인건비, 운영비 등 복합적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액가맹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매출/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가맹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을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 및 영업과 관련하여 수강생수, 교구재 사용량,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고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매월 말일 이를 당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수집, 당사의 직원이 가맹점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년 후 신규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점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1-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라. 그 밖의 부담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 마.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귀하는 “툰툰영어 베이비리그” 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구)툰툰영어 베이비리그” 또는 “(전)툰툰영어 베이비리그”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당사가 철거 및 삭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교구재에 대한 대금을 당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회원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6) 가맹점사업자는 제19조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7)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구입 및 임차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 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 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튼튼영어베이비리그]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1)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제한

당사는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교재 및 교육서비스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 시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교재 및 교육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의 판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교구재 등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튼튼영어 베이비리그와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가맹점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당사의 튼튼영어 베이비리그(사업형태가 동일한 가맹점사업을 포함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한정되며 그 밖의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콘텐츠를 이용한 프로그램 프랜차이즈사업,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공교육 프로그램사업 등과 같은 브랜드 사업이나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도서관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사업 등과 같은 사업형태가 다른 형태의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나.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 1 차기준 : 행정구역 상 광역시는 1 개 구, 그 외의 도시는 1 개 시/군 당 1 개 점포 - 2 차기준 : 가맹점소재지로부터 직경 1km(반경 500m)	계약 시 개별적으로 영업지역 합의하여 별지에 지도로 표시

\*당사는 일부 교재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유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유통망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거점지역에서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와 해당지역의 가맹점간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마.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가맹점 총 매출액)	기타 오프라인 (직영점 총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6.0%	4.0%	0.0%	0.0%

####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0%	0.0%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 가. 가맹계약기간

튼튼영어 베이비리그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효력발생일)로부터 2 년이며, 갱신 시에는 1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 나.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으로 가맹계약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갱신거절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	관련계약조건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사유
1.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8조 내지 제13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관련된 내용(예 : 특약, 별도 약정서, 합의서, 동의서 등 기타 제반 문서)을 위반한 경우

-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사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2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2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구재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수정사유, 사전통보여부 및 동의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조건	양도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정보공개서 제공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면담포함, 15일 가량 소요) →승인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5일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기간에 대하여 가맹점 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가맹점의 설비, 가입비 등은 제외한 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 존비속의 영업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8. 경업 및 겸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가. 경업 및 겸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튼튼영어 베이비리그와 동종업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 금지되는 업종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와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가맹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중 당사의 허락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소재지에서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튠튼영어 베이비리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오전 10시~오후 7시	주5일(화요일~토요일)

- ① 센터 “영어놀이활동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 요일 및 시간을 당사와 협의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영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권장종업원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여부

권장종업원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여부
가맹점 및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판매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담원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센터장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부담비율 안내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상품광고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부담비율 안내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타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 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9 조 (비밀유지 의무), 제 20 조(경업 및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백만원(W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4조제1항
귀하가 제 32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으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백만원(W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
귀하가 지정거래처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지정거래처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백만원(W1,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W100,000)씩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항
귀하가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필수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 하거나 지정된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이백만원(W2,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이십만원(W200,000)씩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제4항

<p>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 일 금삼십만원(₩ 3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제34조 제5항</p>
<p>제 1 항 내지 제 5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34조 제6항</p>
<p>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p>	<p>제38조제1항</p>
<p>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p>	<p>제45조 제1항 및 제2항</p>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577-0589). 방문 - 인터넷홈페이지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및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 정보공개사항 검토 - 가맹계약사항 검토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가맹계약서 제공 14 일 후 계약	
가맹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 일	
임차계약	- 사업장 위치 선정 - 입지에정지 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사업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실측/ 평수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도면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 협의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25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설치	4 일	
교육	- 센터장 - 센터 강사, 판매 사원	10 일 이내	
개점	개설 리허설(담당 운영과장 판단 후 개설 결정) 오픈 행사(담당 운영과장 판단)	D-day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분쟁해결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ul> <p>&lt;분할지급 시 절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 시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가. 개설 전 교육프로그램

당사는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대상
개설교육	베이비리그프로그램 이해 교구재별 특징	토의 및 강의식	1박2일(16시간)	센터장
관리교육	베이비리그 프로그램과 시스템 강사의 역할과 기본업무 효과적인 과정지도 방안	토의 및 강의식	1일(8시간)	센터장 및 큐레이터, 크리에이터
상담 교육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 상담 화법 아동 특성 분석	토의 및 강의식	1일(8시간)	센터장 및 큐레이터, 크리에이터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나. 개설 후 교육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튠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점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설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기본교육	센터장, 신입큐레이터, 크리에이터의 Program 등의 숙지를 위한 교육	토의 및 강의식	1일(8시간)	센터장 및 큐레이터, 크리에이터
심화교육	베이비리그 프로그램과 시스템, 강사의 역할과 기본업무 및 효과적인 과정지도의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	토의 및 강의식	1일(8시간)	센터장 및 큐레이터, 크 리에이터
수시교육	경영 및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토의 및 강의식	연 6회 1일2시간)	센터장 및 큐레이터, 크 리에이터

## 2.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설교육	18	가맹비에 포함	
관리교육	8	가맹점 오픈 전 교육은 가맹비에 포함/ 개정 이후 30,000	
상담교육	8		
보수 교육	2	무료	연6회 이내
수시교육	8	550,000	규정집 위반 시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필수) 및 큐레이터, 크리에이터(협의)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판매 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설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설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사유 및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2024년 말 기준 다음과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베이비리그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4, 4층
2	경기	베이비리그 하남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 번길 75, 303-305호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5년 8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8,784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자체프로그램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품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귀하가 직접 자체조달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 시 차액가맹금 및 판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당사가 귀하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으로, 거래상대방에 따른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가 "X"로 표시되더라도, 협력업체로부터의 판매 수수료 수익, 재판매 수익, 또는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명의인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여 귀하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자체 공장이 없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에는 원자재, 인건비, 운영비 등 복합적인 비용 구조로 인해 차액가맹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X"로 표시됩니다.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 개정 시 인테리어, 설비/집기 등 일시적인 공급품목(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은 제외되었습니다.

별첨 2. 재무제표(2022~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